

2022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공감소통연구회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공감소통연구회 귀하

이동현, 양민규, 김용석

이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6. 14

- 연구기관 :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책임연구원 :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연구원 :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
- 자문위원 : 이동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종은 (2교시 대표, 회계사)
이의헌 (점프, 대표)
이희창 (한양여대, 교수)

(요약문)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안지훈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 관련 기업의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민관 차원의 제반 정책과 실행의 진전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아직까지 ESG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기에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ESG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더 나은 조례 제정 방안 도출이 필요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 서울특별시 ESG경영 지원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제반 내용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3. 주요 연구 내용

요 약

- ESG경영 법제화 관련 논의의 분석
-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사례 연구
-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

4. 연구 결과

- ESG는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업이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 사항과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
- ESG 정책 설정 방향의 어려움
 - 사기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재무적 성과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환경과 인권 이슈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를 사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의 부담이 있음.
-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110대 과제 평가
 - 시대적 요구로서의 사회적 가치,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ESG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어 보이나 해결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
 - 넓은 의미에서 ESG는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윤 정부의 이해도와 비전 제시가 미흡해 보임

요 약

○ ESG 관련 정책 논의의 시사점

- ESG 경영 지원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은 담보 또는 정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ESG 경영 지원 조례 등 아래로부터의 ESG 정책 확대를 위한 선도적 조치가 필요함.
- ESG의 한 축인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 자본주의 모델과 관련한 근본적 논의로도 연결될 수 있으나, 본 연구 범위를 넘는 추상적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루지 않기로 함.

○ ESG경영지원법제 관련 논의의 분석

- 아직까지 ESG경영지원법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 향후 과연 ESG경영지원법제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할 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평가

- 대부분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원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음.

요 약

○ 중앙정부 정책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은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의 체계화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ESG 경영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 실정임.

○ 사회적책임경영지원 정책과의 중복 문제

- 향후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정책과 ESG경영 지원 정책과의 관계 설정 및 정비가 필요함.
-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과 ESG경영 지원과의 관계 설정 및 정비가 필요함.

○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방향

- ESG경영 지원의 의미 명확화
- ESG 경영 지원을 통한 목표 설정의 업그레이드
- 좁은 의미의 ESG경영지원의 범주화
- ESG경영지원 우선 적용 대상의 명시

목 차

I .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주요 연구 내용	2
4. 연구의 활용 방안	3
II . ESG 경영 관련 이론적 논의	4
1. 일반적 논의	4
2. K-ESG	15
3. ESG 관련 정책 논의	23
4.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110대 과제 평가	26
5.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공약 분석	28
6. ESG 관련 정책 논의의 시사점	30
III. ESG경영 법제화 관련 논의의 분석	32
1. ESG경영지원법제의 의미	32

2. 행정법적 쟁점	33
3. 회사법적 쟁점	33
4.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34
5. ESG경영지원법제 관련 논의의 분석	35
IV.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사례 연구	36
1.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현황	36
2.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의 구성과 내용	37
3.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	40
4.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내용 비교	42
5.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평가	46
V.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 정책	47
1. 기본방향	47
2. 추진방안	48
3. 중앙정부 정책 평가	50
VI. 사회적책임경영과의 중복 문제	51
1. 중앙정부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정책과의 중복 문제	51

2.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관련 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	55
VII.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	59
1.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방향	59
2.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구성과 주요 내용	61
3.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안)	64
〈참고문헌〉	68

표 목 차

〈표 1〉 국민연금 총투자규모와 ESG 비중	10
〈표 2〉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11
〈표 3〉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조사 결과	13
〈표 4〉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26
〈표 5〉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E 관련 정책	27
〈표 6〉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환경 관련 정책	27
〈표 7〉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위기 관련 정책	27
〈표 8〉 ESG 경영 지원의 의미	30
〈표 9〉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현황	36
〈표 10〉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	41
〈표 11〉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목적 비교	42
〈표 12〉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추진계획/지원계획 비교	43
〈표 13〉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지원사업 비교	45
〈표 14〉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45
〈표 15〉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52
〈표 16〉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일정	53
〈표 17〉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상 제시된 CSR과 ESG의 비교 1	54
〈표 18〉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상 제시된 CSR과 ESG의 비교 2	54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연구 활동의 일환임.

나. 과업의 배경

-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 관련 기업의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함.
-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민관 차원의 제반 정책과 실행의 진전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아직까지 ESG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ESG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발견되는 정도임.

다. 과업의 목적

- 우선 ESG 관련 법제 정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된 ESG 경영 지원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함.
- 이를 바탕으로 제도 연계성,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 사회적 가치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함.
-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서는 ESG 관련 법제화의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시를 ESG 선도 도시로 전환하며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의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SG 관련 법제 정비 방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행정법과 회사법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예상되는 국회 차원의 입법안을 예상하면서 바람직한 조례 제정 방안을 강구함.

- ESG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관련 조례들과 체계 문제도 해명되어야 할 과제에 포함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서울특별시 ESG경영 지원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제반 내용
- 장소적 범위 : 서울특별시
- 시간적 범위 : 2022년

나.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ESG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ESG 관련 법령 현황 조사
 - ESG 관련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 ESG의 의의
 - 일반적 논의
 - ESG 평가

- ESG경영 법제화 관련 논의의 분석
 - 행정법적 쟁점
 - 회사법적 쟁점
-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사례 연구
 -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평가
-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
 -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방향
 -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구성
 -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주요 내용

4. 연구의 활용 방안

- 가. 서울시 의회의 ESG 관련 정책 수립 관련 전문 자료로 활용
- 나. 서울시의 ESG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 자료로 활용
- 다. ESG 관련 학계의 후속 연구를 위한 실증 자료로 활용

II. ESG 경영 관련 이론적 논의

1. 일반적 논의

가. ESG의 의미

- ESG는 투자자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이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정준혁, 2021).
 - 정준혁(2021)은 ESG의 목적에 대해 투자자와 기업의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근로 환경과 인권, 양성 평등과 빈곤 해소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
- ESG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함.
 - 알렉스 에드먼스(2021)는 ESG에 대해 자본주의 이분법 곧, 사람과 이윤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원칙으로 이해하며 이를 ‘파이코노믹스(Pieconomics)’라고 명명함.
 - 리베카 헨더슨(2021)은 ESG를 통해 시장/규제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까지 주장함.
- 기업 경영에서 ESG의 의의
 - 권재열 외(2022)는 기업 경영에서 ESG의 반영은 하방 위험에 대한 방어 곧, 자산 가치의 하락에 대한 방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함.
 - 김화진(2022)은 ESG와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분석하면서 ESG를 표방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통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실천되어온 주주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나. 유사 개념과의 차이¹⁾

○ CSR과 ESG 개념의 차이

- CSR, CSV, ESG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논의의 시작은 1987년 브룬드란트 보고서에서 시작됨.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

○ CSV와 ESG 개념의 차이

- CSV(Creating Shared Value) : 기업의 가치사슬 중 사회적 성과가 창출되는 지점을 찾아 사업화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전략
- 기존 CSR과 다른 점 :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접 연결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찾아낸 전략적 CSR
- CSR이 CSV로 업그레이드된 건 아니며 CSR은 보다 규범적이고 가치철학적인 상위개념

○ 기업의 투자 리스크 관리 평가 지표로서의 ESG

- 근본적인 개념은 기업이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견지하는 관점
- ESG의 주목적은 투자 리스크 관리
- ESG 평가의 핵심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각 산업별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 해당 기업이 리스크와 기회요인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가, 또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

1) 이은선, “사회적 가치와 ESG개념과 전개”,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 ESG를 잘한다고 해서 곧바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며 따라서 단순히 ESG를 잘 한다고 해서 사회적가치가 잘 창출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 대두 배경

- ESG 논의는 2000년대 UN 등 국제기구의 제창 하에 시작되었지만(정준혁, 2021), 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임.
-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은 6가지의 투자원칙을 제정해 ESG를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를 권고함.
 -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투자회사가 해당 원칙을 지키기로 서명
 - 갑작스러운 변화는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ESG투자를 확대해 15년 후인 2020년에 책임투자원칙을 본격화하기로 약속함²⁾
 - 2018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투자대상회사들에게 ESG를 강조함(정준혁, 2021).
 - 2019년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겠다고 선언함(정준혁, 2021).
-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ESG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 2년 사이에 가히 ESG 열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기금, 기관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앞다투어 ESG 투자와 경영을 선언하고 있음(정준혁, 2021).
- 트리스타 브리지스와 도덜나 유뱅크(2022)는 MZ세대의 특징과 관련하여 ESG의 대두 배경을 설명함.

2)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은?

이로UNET 입력 2021.03.31 05:00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961>

-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MZ세대는 소득 불평등, 기후변화, 생물 대멸종 가능성이라는 현실에서 성장했음.
- 또한 MZ세대는 역사적으로 보건데 세계 어느 곳이든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상호 연결되어 있음.
- MZ세대의 젊은이들은 점차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가 너무 늦어지는 세상은 물려받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

라. ESG 평가³⁾

○ ESG 평가의 목적

- 지속가능성 및 CSR 제고와 책임투자 지표
- 각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함
- 해외 평가기관은 각 목적에 맞는 평가결과를 제공함

○ 현재 기업 평가 시 나타나는 결과

- 기업 대상 ESG 평가 시 주로 정규분포보다 한쪽 또는 양쪽에 쏠린 분포가 나타남
- 이는 규제준수 일변도의 ESG 대응 때문으로 분석

○ ESG 평가기준 변화

- 과거에는 지속가능성/책임투자 평가가 프로세스 중심의 정성적 평가를 진행
- 요즘은 성과중심의 정량적 평가로 발전

3) 장윤제, “국내 ESG 평가기관의 환경, 사회 평가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마. ESG 평가 등급 관련 난맥상⁴⁾

○ ESG 등급 현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S, A+, A, B+, B, C, D 등 7등급으로 구분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참고 자료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을 활용하고 있는 바, AAA, AA, A, BBB, BB, B, CCC 등 7등급으로 구분
- 현재 시행중인 ESG 평가 지수만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 문제점

- ESG 평가 지수가 난립함에 따라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ESG 어지럼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 평가 기관에 따라 같은 기업의 ESG 등급도 천양지차로 나오는 형편.
- 지수 평가기관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업의 ESG 등급도 서로 다른 차이가 나는 실정임.
- ESG 평가 지수가 기관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ESG의 역사가 짧고, 아직까지 학문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 때문으로 분석됨.

바. 글로벌 ESG 투자 규모⁵⁾

-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추정치에는 유의한 편차가 존재하나, 그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공통적으로 관찰 가능함.

4) “하긴 해야하는데”...평가지수만 200개 ‘ESG 경영 어지럼증’
중앙일보 신문E3면 1단 기사입력 2021.04.21. 오전 5: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3095216>

5) 이시연,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금융조사보고서 Vol.2021 No.1(한국금융연구원, 2021).

- UN PRI(책임투자원칙) 참여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투자 대상 자산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ESG 투자 전략은 두 가지 방식, 곧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ESG 통합 전략 활용도가 높지만,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의 활용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투자펀드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ESG 채권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3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회복된 바 있으며, 녹색채권의 글로벌 누적 발행 총액은 2020년 12월 초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섬.
- 또한 국내 ESG 투자자산 규모도 근래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자산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 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원화표시) ESG 채권 상장종목의 경우 2020년 12월 중순 현재, 549개, 상장잔액은 82.6조원이며,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신규상장된 종목은 376개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국내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연기금과 같은 공적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들의 ESG 대응 단계를 평가하면 아직까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임.

사. 국민연금의 ESG 투자⁶⁾

- 국민연금 총투자규모 대비 ESG 투자 비중

6) 소셜혁신연구소 내부자료.

- 전체 금융투자규모 기준 : 13.8%

○ 분석

- 총투자규모 대비 ESG 투자 비중 평가 시, 해외 투자, 대체 투자에서도 ESG 관련 비중을 별도로 감안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비중으로 추정됨

- 국내 주식투자만 기준으로 할 경우 55.8%에 달하는 ESG 투자를 실행중

〈표 1. 국민연금 총투자규모와 ESG 비중〉

구분	총투자규모(2021)		ESG 관련	비중(%)
포트폴리오 추이 (시장가)	948,719	949조		
공공부문	-			
복지부문	201			
금융부문	948,106	948조	130.4조	13.8
국내주식	165,808	165조	92.0조	55.8
해외주식	256,625			
국내채권	339,991	340조	38.4조	11.3
해외채권	63,896			
대체투자	119,305			
단기자금	2,481			
기타부문	413			

○ 국민연금 총투자규모

- 총투자규모 : 대략 900조

(표 2.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단위 : 십억 원, 2022.1월 말 기준)

구분	현황 (말잔)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포트폴리오 추이 (시장가)	914,132	914,132	948,719	833,728	736,654	638,781	621,642
공공부문	-	-	-	-	-	-	-
복지부문	202	202	201	180	166	145	143
금융부문	913,027	913,027	948,106	833,138	736,079	638,217	621,018
국내주식	150,980	150,980	165,808	176,696	132,261	108,914	131,520
해외주식	238,011	238,011	256,625	192,752	166,528	112,961	108,279
국내채권	336,442	336,442	339,991	326,099	320,751	310,993	289,401
해외채권	65,022	65,022	63,896	44,883	30,462	26,587	23,274
대체투자	121,519	121,519	119,305	90,660	84,295	76,620	66,817
단기자금	1,054	1,054	2,481	2,049	1,782	2,143	1,727
기타부문	902	902	413	409	408	420	481

주1) 각 수치는 반올림이며 세부내역, 합계의 단수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주2) 2021년, 2022년 수치는 잠정치임

- 공표통계(2020년 기준) 운용금액 : 833조 7276억원

○ ESG 투자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 및 운용규모(2021년 말 기준)

- 국내주식

- 직접운용 : 약 84.3조 원
- 위탁운용 : 약 7.7조 원

- 국내채권

- 직접운용 : 약 38.4조 원(액면금액 기준)

아.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⁷⁾

-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ESG의 중요성에 대해 발 빠르게 인지하고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대응코자 하는 상황임
 - 예: 2021년 기준, KB금융지주 ESG전략부, 신한금융 ESG기획팀, 우리금융 ESG경영부 등
-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중소 규모 기업들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업체 3,814천 개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3,809천 개로 99.9% 비중을 차지. 종사자수의 경우도 총 종사자 17,712천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5,883천 명으로 89.7% 수준
 - 압도적인 비율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인 경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임.
 - 'ESG 경영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응답 비율' - 70%
 - 'ESG 경영 수준 - 5점 척도 기준, 2.9점으로 보통(3점) 이하'
- ESG 담당 조직/담당자 현황
 - ESG 위원회 설치(15.7%)
 - 전담조직 설치(21.0%)
 - ESG 담당 임원 있음(12.7%)
cf. 대한상공회의소·KPC, 국내기업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7)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1/4분기).

○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 200개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조사 결과

〈표 3.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 조사 결과〉

	문항	답변
1	기업 성과 달성에 ESG 경영이 중요하다.	4.38(6점 만점) 긍정 응답 비율 82.5%
2	올해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한다.	4.18(6점 만점) 긍정 응답 비율 76.0%
3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36(6점 만점) 긍정 응답 비율 79.0%
4	ESG 운영을 전담하는 실무조직 또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예 12.5% / 아니오 87.5%
5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을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SG 관련 교육지원(58.0%) -전문가 자문지원(51.5%)
6	정부 및 기관에서 ①ESG 가이드북 / ②온라인교육 / ③설명회 / ④개별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면 이를 활용하겠다.	긍정 응답 비율 ①94.0% ②97.0% ③92.5% ④92.5%

자. ISC 제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로드맵⁸⁾

○ STEP 1.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진단하라

-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진단은 ESG 경영 도입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음(Zacchetti and Ragaini, 2021).
-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 ESG 경영 자가진단표4〉를 통해 노무, 안전, 윤리 경영, 환경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ESG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에는 경쟁사 분석, 업종별 규제 분석, 업종 관련 최근 이슈 분석, 주요 이해자 분석 등이 포함됨.

8)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1/4분기).

○ STEP 2.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라

- 경영이념을 설정하고 ESG 전략과 정렬하라 - 모든 노력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정렬하기 위해 경영이념 - ESG 전략 간의 정렬이 필요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특화된 ESG 전략을 설정하라 - 1단계 진단에서 도출된 AS-IS 와 TO-BE 사이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ESG 방침을 선포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라 - 방침에는 의지(will)와 방향성(direction)을 내포하는 것이 중요

○ STEP 3. ESG 경영 실행을 위한 우선과제를 선정하라

- ESG 전략을 바탕으로 도출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높은 우선순위의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STEP 4. ESG 경영인프라를 갖춘 조직으로 변화하라

- 본격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실행 역량을 갖추는 단계로 의사결정 레벨에서 실무자급 레벨까지 전사적 ESG 경영 체계를 설계·구축해야 함.
- 단기 과제: ESG 전담 조직 구축, 임직원 대상 ESG 교육
- 장기 과제: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ESG 조직문화 정착

○ STEP 5.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라

-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ESG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 STEP 5는 다시 STEP 1과 연결되어, STEP 5의 결과를 STEP 1 과정에 반영

2. K-ESG(가이드라인 v1.0)

가. 개요

○ 제작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제작처 :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 제작 시기 : 2021년 12월

나. 추진 배경

○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증가

-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
-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 확대(EU, 영국 등)

○ 기업의 ESG 경영 추진과 평가대응 애로 증가

-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에서 각각의

평가기준, 평가방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기관마다 고유한 평가 프로세스, 지표, 측정산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일관된 평가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음

다. 구성 방향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 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일반)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의 제시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대응 역량 확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별 제시(27개 항목)
- (평가·검증기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 제시

라. K-ESG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 개요

○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 (영역) 앞서 기술한 ESG 정의를 기반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여부 측정 항목 추가하여,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대분류 설정
- (범주) 국내외 ESG 공시/평가기준에서 공통 제시 이슈 기반으로, 조직이 ESG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

○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 제공

- (추가설명) 각 진단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경영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진단항목에 따라서는 대체 진단 기준 및 활용 근거 설명
- (용어정리) 항목정의서 및 추가 설명 중 별도 기술 필요 용어 정의
- (참고자료) 항목정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해외 유사 지표 제시

○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추가 진단항목 정의)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는 않으나 ESG 경영의 추가적인 필요요소를 제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
- (활용)
 - ① 기본 진단항목 적용 불가 시 대체 활용
 - ②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적으로 조직의 ESG 성과 점검
 - ③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에 활용(ex. 산림탄소흡수량, 고졸직원 채용 등)

마. 진단항목 정의서 특징

○ 기본 진단항목의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 제시

- 국내/해외 ESG 평가 지표의 경우 ESG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들의 자가진단 불가 → 과도한 비용/노력 소요
-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은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 기업들이 진단항목의 기준 및 방향성을 활용해 스스로 성과를 진단하고 ESG 성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한국적 특성 반영, 법/제도 정합성을 반영하여 실제 경영환경에서 ESG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 지원

- 자가 진단을 위한 기본 진단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진단항목 체계를 통해 제공
 - ESG 경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각 영역(ex.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개별 진단항목 개발 시, 단계별 기준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추가적 설명을 통해 ESG 자가진단을 위한 상세한 정보 제공
 - 각 영역의 범주별 ESG 수준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공
-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대체 활용 가능한 추가 진단항목 제시
 - 기업의 ESG 수준 및 성과는 기본 진단항목을 활용해 진단
 - 다만, 기본 진단항목으로 평가가 불가하거나, 기본 진단항목이 아닌 특화된 항목으로 진단을 원할 경우 개별
 - 기업/기관의 니즈를 고려해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진단항목 제시
 -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도록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제시
 -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
 - 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현황과 수준을 진단할 경우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진단항목 구성
 - 그 외에도 평가 및 검증기관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ESG 수준 평가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바.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정보공시 (P)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E)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E-2-1	원부자재 사용량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E-3-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E-3-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E-5-1	용수 사용량
		E-5-2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환경 (E) (17개 문항)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S) (22개 문항)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2	정규직 비율
		S-2-3	자발적 이직률
		S-2-4	교육훈련비
		S-2-5	복리후생비
		S-2-6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3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S-4-2	산업재해율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S-5-2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S-6-2	협력사 ESG 지원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사회 (S) (22개 문항)	지역사회	S-7-2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G)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전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전 처리	
	주주관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2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4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G-5-1	내부감사부서 설치	
		G-5-2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			

3. ESG 관련 정책 논의

가. ESG 정책 설정 방향의 어려움⁹⁾

- 사기업은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재무적 성과의 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권과 환경 이슈의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는 있음.
 - 공사법 이원체제는 공법과 사법 간 구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는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 우리사회에서 ESG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바, ESG 요소가 환경, 인권과 같은 초국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또한 더 이상 우리가 ESG 이슈를 외면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정보공시와 표준기준 따위를 통한 회원국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식의 ESG 정책이 바람직함.
 - ESG는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를 사기업에 강요하는 것, 곧 경찰행정법적 접근의 도모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임.

나. K-ESG 관련 논의¹⁰⁾

- ‘ESG 경영’을 평가하는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
- K-ESG 관련 정책 제안

9) 김용훈, “헌법적 수준에서의 ESG의 함의와 정책 방향 소고 : 유럽연합의 ESG 정책을 참고하여”, 유럽헌법연구 Vol.- No.36(유럽헌법학회, 2021)

10) 김수정, “K-ESG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ESG 관련 국제표준 분석결과를 토대로”(서울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 보완 필요 :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내외로 매우 많은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ESG 확산을 위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 분명
- 이해관계자 니즈 파악 및 대응에 대한 부분 보완 필요 : ISO 26000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표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
-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보완 필요 : 법규 준수라는 항목이 K-ESG에 포함되어 있지만,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임.

다. ESG 관련 정부의 역할 관련 논의

- 임팩트 스쿼어는 국내외 ESG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히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 ESG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논의함.¹¹⁾
 - ESG 관련 글로벌 정책·사례 검토·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도출
 - ESG와 연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사업 및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 제시
 - ESG-사회적가치 연계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적 정부역할 제시
- 이를 통해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ESG 정보공개 가이드 제시
 - 연기금의 유니버설 오너로서의 역할 강화 및 연기금 ESG 투자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ESG 강화

11) 임팩트 스쿼어, 『ESG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1. 10.)

- 공공기관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ESG-사회적 가치 창출 내재화
- ESG 내재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설계
- 국민연금 능동성 관점 도입
- 공공기관 본질적 목적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한 ESG 내
- ESG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 구축 필요성
- ESG 실행방안 활성화를 위한 사례가이드 제
- 임팩트 워싱 예방을 위한 규제
- 규제 가속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응
-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ESG 캠페인

라. 기타 논의

- ‘ESG 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화할 필요¹²⁾

12) 이시연,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0(한국금융연구원, 2021)

4.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110대 과제 평가

가. 총론적 평가

- 시대적 요구로서의 사회적 가치,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ESG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어 보이나 해결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
-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 많은 분야에서 이전 정부의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 하는 이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함
 - 시대적 과제라 할 ESG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제반 분야에서 문 정부의 성과가 후퇴될 우려가 있으나, 특히 노동 분야에서 노동인권 후퇴가 예상됨
 - 중대재해 방지, 노동시간 유연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파업 대응 등에서 큰 폭의 노동인권 후퇴가 우려됨

나. 각론적 평가

- 국정운영원칙에도 사회적 가치 증진, 복지 강화, ESG 국제기준 등은 배제되어 있음

〈표 4.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3.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

-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 정부가 일을 잘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분열과 대립을 완화
- +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통합 진전

- (생산적 맞춤형)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함
 →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

- 국정운영원칙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 ESG 중 E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큰 산업 위주의 사고방식을 보여줌

〈표 5.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E 관련 정책〉

국정과제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국민께 드리는 약속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환경 관련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를 답습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한 데 불과함

〈표 6.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환경 관련 정책〉

국민께 드리는 약속
 13.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기후환경위기를 청년들의 꿈과 도전, 미래 기회 등으로 연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실현 방도가 제시되지 않음

〈표 7.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위기 관련 정책〉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

5.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분석 : 공약 분석

가. 좁은 의미의 ESG 공약

- 총적 방향 :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 ESG 평가 지표의 표준화 추진
 - ESG지표를 활용한 기업의 현황 평가, 금융·세계 지원, 경영·법률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지원 강화
-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추진
 - ESG관련 다양한 대/중소/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평가
 - 이미 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ESG 경영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이나 세부적인 정책 보완 필요해 보임

나. 지배구조 관련 공약

- 총적인 방향 : 기업관련법의 정비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관계의 부존재 증명 시 예외 인정 등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복수의결권제도도입

○ 평가

- ESG의 한 축인 지배구조 개선 관련 실질적인 공약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
-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많이 제출되어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음
- 주주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SDGs, ESG 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경제 트렌드를 윤 정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넓은 의미에서 ESG는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윤 정부의 이해도와 비전 제시가 미흡해 보임

6. ESG 관련 정책 논의의 시사점

가. ESG 경영 지원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ESG 경영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 학자, 현업 실무자, 정책 담당자가 제각기 통일되지 않은 개념을 사용중임
 - ESG 경영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필요함
- ESG 경영 지원의 의미를 기업 차원의 좁은 의미의 ESG경영 지원과 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확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차원의 좁은 의미의 ESG경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SG인증 등 ESG 기준을 기업이 수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지원
 - 기업 구성원들의 ESG 인식 확대 등을 위한 교육 등 비용 소요에 대한 지원

〈표 8. ESG 경영 지원의 의미〉

ESG 경영 지원	좁은 의미의 ESG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인증 등 ESG 기준을 기업이 수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지원 - 기업 구성원들의 ESG 인식 확대 등을 위한 교육 등 비용 소요에 대한 지원
	확장적 의미의 ESG 경영 지원	

나.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은 담보 또는 정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ESG 경영 지원 조례 등 아래로부터의 ESG 정책 확대를 위한 선도적 조치가 필요함.

- 다. ESG의 한 축인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 자본주의 모델과 관련한 근본적 논의로도 연결될 수 있으나, 이론적 논의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통한 자본주의 모델 논의까지 확장되지는 않고 있음.
- 외국에서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담은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음.
 - 예컨대, 린 스타우트(2021)는 경영학의 금과옥조로 여겨져온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명제는 기업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오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주주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미친다고 주장함.
 - 한국은 아직까지 주주 자본주의마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 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주주 이익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함.
 - 이관희(2022)는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주 박한 점수를 받는 나라로 일반주주들의 이익이 지배주주들의 이해에 가려지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한 논의는 본 연구 범위를 넘는 추상적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루지 않기로 함.

III. ESG경영 법제화 관련 논의의 분석

1. ESG경영지원법제의 의미

- 학계에서는 대체로 ESG경영지원법제의 의미를 좁게 보고 있음
 - 안수현(2021)은 실질적인 ESG경영법제는 이사회와 경영자가 ESG관련 경영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정의함.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내 법령이나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ESG경영지원법제라고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 없음.
 - 또한 ESG 자체가 확정적인 법개념도 아니며, 그 평가기준과 요소가 아직 표준화되거나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정영철, 2021)도 있음.
- 안수현(2021)은 외국의 경우 법제 차원의 ESG경영 지원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ESG관련한 공시제도의 정비
 - 이사의 의무
- 안수현(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소에서 투자자 포함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ESG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ESG 관련 이사의 의무에 관해서는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2. 행정법적 쟁점

- 정영철(2021)은 ESG 개념이 아직 확정적인 법개념이 아니라는 점, 평가기준과 요소가 아직까지 표준화되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ESG 개념의 규범적 수용 가능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함.
 - 따라서 ESG를 행정법 영역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정영철(2021)은 ESG의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를 환경권, 사회국가원리와 함께 민주주의원리에서 도출하고 있음.
 - 정영철(2021)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입법화하는 방식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보다는 현 우리 법제에서는 더욱 바람직한 수용방식이라고 제안함.

3. 회사법적 쟁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발원하여 유엔의 사회책임투자에서 최초로 등장한 ESG는 등장배경 및 개념과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공법보다는 사법, 사법 중에서도 상법이나 경제법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주제임(정영철, 2021).
- ESG 논의가 회사법에 던지는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정준혁, 2021)
 - 회사가 주주와 이해관계자 중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 ESG 경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주주 중 누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문제
 - ESG 요소의 추구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관계에 관한 문제
 - 헤지펀드와 같은 주주단기주의에 대한 입장 문제

- ESG 공시나 평가 제도는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
-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ESG를 추구하는 것이 수탁자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지 하는 문제

4.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기관투자자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곧, 수탁자 책임원칙은 2016년 국내에도 도입, 4년 남짓 운용되어 옴(백기웅, 2021).
 - 백기웅(2021)에 따르면 2021년 1월 현재 130여개 기관이 도입하여 운용 중임.
- 백기웅(2021)은 단순한 ‘Comply or Explain’의 연성법(soft-law)적인 접근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금융위 시행령을 활용하여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함.
 -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신고의무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부분적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 항목의 신설이 필요한 바, 2020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으로 법제화 되었으나 공동보유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해야하는 점이 보완사항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함.
 - 나아가 멀지 않은 미래에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논의절차를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업지배구조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 망라한 국회의 입법을 통한 별도의 단행법제(한국형 ESG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5. ESG경영지원법제 관련 논의의 분석

- 아직까지 ESG경영지원법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 향후 과연 ESG경영지원법제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할 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회사법 분야에서는 ESG의 3가지 영역 중 지배구조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발견됨.
 - 대표적으로 스투어드십 코드의 법적 개선 문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IV.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사례 연구

1.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현황

- 2022년 4월 30일 기준, 5곳의 광역자치단체가 ESG경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최초로 ESG경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로 2021년 7월 23일에 공포함.
 -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2021년 12월 말 ESG경영 관련 조례를 제정함.
 - 2022년 들어 경상북도가 ESG경영 관련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명칭은 충청남도를 제외하면 모두 ‘ESG 경영 지원 조례’로 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 중임.

〈표 9.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 현황〉

순번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제4657호	2022.3. 3.	2022. 3. 3.
2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제5760호	2021. 7. 23.	2021. 7. 23.
3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제2518호	2021. 12. 29.	2021. 12. 29.
4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5118호	2021. 12. 30.	2021. 12. 30.
5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제4689호	2021. 12. 31.	2021. 12. 31.

2.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의 구성과 내용

가. 조문 구성

-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이하 '광주 조례'라 함)는 모두 11개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광주 조례의 조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시장의 책무
 -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5조 추진계획
 - 제6조 ESG 경영 확산
 - 제7조 위원회의 설치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포상
 -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 광주 조례의 내용 구성은 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조례와 대동소이함
 - 시장의 ESG경영지원 책무 규정(제3조)
 - 협력체계 구축(제11조)
 - 추진계획 수립 · 시행 의무(제5조)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ESG경영 확산 지원(제6조)
 - 다른 조례와 관계(제4조)
 - 관련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제7조-제9조)
 - 포상(제10조)

나. 주요 내용

- 광주 조례 상의 ESG경영 및 ESG경영지원의 의미
 - 제2조는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ESG 경영의 의미와 동일한 맥락에 있음.
 - ESG 경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음.
- 광주 조례 상의 ESG경영지원의 목적
 - 제1조는 ESG경영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제5조)
 -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 심의 내용(제7조)
 - 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

- 지자체별 ESG경영지원 조례 조문 구성은 대동소이함.
 - 울산, 충남, 경북의 경우 시행규칙 관련 조문이, 충남의 경우 의견 청취 관련 조문이 추가되어 있으나,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삽입되는 조문으로 ESG 경영과 관련한 차별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후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는 ESG 경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광주 조례와 울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 없었으나, 충남, 충북, 경북은 사업 내용 관련 조문을 추가함.
- 광주 조례와 울산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ESG경영 확산 관련 조문이 있으나 충남, 충북, 경북은 관련 조문이 없음.
 - 충북과 경북은 지원계획/실시계획 수립 내용의 일부로 확산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ESG경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차별화되는 조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광주 조례와 충남은 포상 관련 조문이 있으나, 울산, 충북, 경북은 포상 관련 조문이 없음.

〈표 10.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

구분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 와의 관계	추진 계획 / 지원 계획	사업	확산	위 원 회	협 력 체 계	포 상	시 행 규 칙	의 견 청 취	자 문 단 구 성
광주	○	○	○	○	○		○	○	○	○			
울산	○	○	○	○	○		○	○	○		○		
충남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경북	○	○	○	○	○	○		○ ***	○		○		

cf.

* 적용 조문 추가

** 위원회 존속기한 추가

*** 위원 임기 추가

4.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내용 비교

가. 조례의 목적 비교

- 지자체별 ESG경영지원조례의 목적은 모두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동일함
 - 충남의 경우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로 함께 처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병기함.
 - 울산의 경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궁극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동일하나,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단계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표 11.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목적 비교〉

구분	목적
광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울산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충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충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경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 조례의 지원계획/추진계획 비교

- 모든 조례가 ESG경영 지원/활성화를 위한 추진/지원 방향 및 목표의 수립을 첫 번째 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광주 조례와 울산의 경우 ESG 경영 역량 제고 방안을 지원계획/추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충북과 경북의 경우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을 지원계획/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방향과 목표 이외에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상세한 내용을 추진계획/지원계획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 수렴

(표 12.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추진계획/지원계획 비교)

구분	지원계획/추진계획
광주	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울산	1.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 방안
충남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충북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경북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다. 조례의 지원사업 비교

- 광주조례와 울산의 경우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충북과 경북의 경우 2가지 지원사업을 예시하고 있음.
 -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충남의 경우 상당히 상세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표 13.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지원사업 비교〉

구분	지원사업
광주	관련 조문 없음
울산	관련 조문 없음
충남	1.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4.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6.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충북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경북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라. 조례의 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 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자체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ESG 경영 확산 방안
- ESG 경영 홍보 방안

〈표 14.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구분	위원회 심의 사항
광주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울산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확산 방안 및 홍보
충남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홍보
충북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경북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지자체 ESG경영 관련 조례의 평가

- 대부분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원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음.
 - ESG경영 지원의 의미에 대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ESG경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추진계획/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ESG 경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곳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더라도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정도에 머물러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가장 상세히 예시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모든 사업 내용은 ESG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ESG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지자체의 조례가 해당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조례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실제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충남과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V.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 정책¹³⁾

1. 기본방향

○ 대목표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한 저탄소 (E)·포용 (S)·공정 (G) 경제로의 대전환 촉진

○ 추진 원칙

- “규율”보다 “지원”에 초점
- ESG 인식개선 중점 추진
-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설계
- 중소기업 부담·혼란 최소화
- 자발적·능동적 참여 유도
- 공공부문이 ESG 확산 뒷받침

○ 연간 목표

- SG 자가진단 50,000개사/年
- ESG 심층진단 600건/年
- ESG 교육·컨설팅 5,000개사/年
- 中企 ESG 우수사례 공시 50건/年

13)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중소벤처기업부, 2021. 11. 23.)

2. 추진방안

가.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 마련·활용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 중소기업 ESG 플랫폼
 -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中企 지원사업 적용
- ESG 교육·컨설팅
 - CEO 교육 및 컨설팅
 - ESG 전문인력 양성
- ESG 사례집 발간

나.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 민간의 자발적인 ESG 확산 유도
 - 대·중견·공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 ESG 자상한기업 발굴
 - ESG 유망 창업기업 육성
- 부문별 맞춤형 지원
 - ESG 수출규제 대응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 사회적책임경영 확산
- 윤리·지속가능경영 촉진

다.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구축

-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 ESG 통합 소통채널

○ 거버넌스 확산

- (지역) 지방중기청 및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협회·단체 지부 협업
- (민간) 민간 및 해외 ESG 평가기관 협업

3. 중앙정부 정책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은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의 체계화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한 저탄소 (E)·포용 (S)·공정 (G) 경제로의 대전환 촉진이라는 대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ESG경영을 통한 기업 차원을 넘는 경제 전반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E, S, G 각각의 목표를 저탄소 경제, 포용 경제, 공정 경제로 설정한 것도 근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궁극적 목표상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ESG 경영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기업 ESG 생태계의 조성,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의 구축 등 3축으로 ESG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시로 볼 수 있는 추진 방안은 ESG 수출규제 대응 정도임.

다. ESG 경영 지원은 사회적책임경영과의 중복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함.

VI. 사회적책임경영과의 중복 문제

1. 중앙정부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정책과의 중복 문제

가. 제1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성과¹⁴⁾

- (기반 마련) 중소기업 CSR 자가진단 및 실행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의 CSR 인식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 확대
 - ‘공급망 CSR 지침’을 개발하여 52개 항목의 자가진단표, 실행 가이드라인 제공(‘18.12월)
 - 중소기업 CSR클럽 운영 : (‘17) 2개 → (‘21) 전국 확대하여 12개 운영
- (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CSR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대외활용이 가능한 CSR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동의 노력 전개
 -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협력사 CSR 지원(‘19~’21, 12개 대기업 15억원 출연)
 -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협력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지표 반영(‘21)
- (사례 창출) 우수한 중소기업 CSR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노력
 - (‘17~’20) 우수기업 CSR보고서 온라인 등록, (‘21) 10개사 통합 우수사례집 발간

나.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22~2026) 기본 방향¹⁵⁾

1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 - 33호,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고시(2022년 5월 6일)

1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 - 33호,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고시(2022년 5월 6일)

○ 비전과 전략

- 비전 :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 전략 : 시의성 있는 중소기업 CSR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과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 정책방향

- 인식확산 : CSR 관련 사회적 혼란 최소화 및 교육·홍보 확대
- CSR경영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CSR 확산 및 기업 맞춤형 지원
- 지원기반 : 중소기업 CSR 인센티브 등 지원기반 강화

○ 세부과제

〈표 15.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 인식확산 】	【 CSR경영 도입 】	【 지원기반 】
정책 방향	① CSR 관련 사회적 혼란 최소화 및 교육·홍보 확대	②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CSR 확산 및 기업 맞춤형 지원	③ 중소기업 CSR 인센티브 등 지원기반 강화
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SR 관련 중소기업 현장 혼란 최소화 ② 중소기업 CEO CSR 경영마인드 고취 ③ 중소기업 임직원 CSR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CSR 확산 ② 수출 중소기업의 CSR경영 지원 ③ CSR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CSR 인센티브 지원 ② CSR 정책 및 플랫폼 고도화, 거버넌스 확대

○ 추진 일정

〈표 16.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일정〉

정책과제	일 정	주관·협업부처
【방향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인식 확산		
(1) CSR 및 ESG 관련 중소기업 현장 혼란 최소화	'22~'26	중기부, 동반위
(2) 중소기업 CEO 경영마인드 제고	'22~'26	중기부
(3) 중소기업 임직원 CSR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22~'26	중기부
【방향 2】 사회적책임경영 도입 맞춤형 지원		
(1)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CSR 확산	'22~'26	중기부, 동반위
(2) 수출 중소기업의 CSR경영 지원	'22~'26	중기부
(3) CSR경영 도입 희망 중소기업 지원 강화	'22~'26	중기부, 환경부, 고용부
【방향 3】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지원기반 강화		
(1) 중소기업 CSR 인센티브 지원	'22~'26	중기부, 조달청 등
(2) CSR 정책 및 플랫폼 고도화, 거버넌스 확대	'22~'26	중기부

다. 문제점

○ CSR과 ESG의 내용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못함

- 2022년 하반기에 ‘학계, 기업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자료 제작·활용’ 예정이나, 고시 계획 상 제시된 내용은 충분치 못함

〈표 17.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상 제시된 CSR과 ESG의 비교 1〉

구분	CSR	ESG
이론적 배경	주주 중심 자본주의	투자 및 경영전략
추진 필요성	기업평판 향상, 이익 창출	투자 유치, 공시의무 이행
대응·실행방안	대기오염물질 등 감축,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안전 등	(E) 대기오염물질 등 감축, (S) 지역사회공헌, (G) 윤리경영 등
	-	ESG 공시 관련 국제 규제를 반영하여 대응 필요

- 최근에는 CSR과 함께 ESG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경영활동의 범위 및 측정, 평가 방법에서 피상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상 제시된 CSR과 ESG의 비교 2〉

구분	경영활동의 범위	측정·평가방법
CSR	개별 기업에서 이뤄지는 경향	정성적 경향 (예: 환경경영 수립여부)
ESG	모기업·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	정량적 경향 (예: 온실가스 배출량)

- ‘ESG 개념이 대두되면서 CSR 및 ESG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CSR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 인식 확산 등 필요’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과 ESG경영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음.

2.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관련 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

가. 조례 현황

-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의 명칭에 ‘사회적책임경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 경기도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조례
-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영등포구의 경우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나.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제2조)
 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2.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3. 통합 리스크 예방과 관리
 4.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활동

5.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6.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7.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9.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10.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11.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제3조)

- 사회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성 강화, 기업 활동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등 기업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활동

○ 적용대상 및 범위(제4조)

1. 도 소속 공공기관
2. 도 출자 · 출연기관
3. 도내 중소기업,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국제사업 기반의 서비스 중소기업 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제8조)

1.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향, 목표, 계획 등이 포함 된 기본 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과 해당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시상과 홍보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화 지원 등 인센티브 포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CSR)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 사회적책임경영(CSR)의 정의(제2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등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1.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 수립
2. 인권 존중 및 올바른 노동관행 확립
3. 고객 만족 및 소비자 보호
4.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지원 대상(제3조)

- 관내 소재 다음 각 호의 자

1. 「상법」 제169조의 회사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7.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제4조)

1.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등의 상호 간 협력 관계망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제5조)

1.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
2.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컨설팅, 자문 등) 및 교육
3. 사회적책임경영 성공모델 및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사회적책임경영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라. 문제점

- 중앙정부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정책과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혼란상과 유사하게 양자의 개념과 관계, 범주 등에 대한 혼란상이 존재함.
- 아직 사회적책임경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본 용역에서 제시하는 ESG경영 지원 정책을 기준으로 향후 사회적책임경영과 ESG경영 지원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VII.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

1.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방향

가. ESG경영 지원의 의미 명확화

○ 좁은 의미의 ESG경영 지원 - 기업 차원

- ESG인증 등 ESG 기준을 기업이 수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지원
- 기업 구성원들의 ESG 인식 확대 등을 위한 교육 등 비용 소요에 대한 지원

○ 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책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나. ESG 경영 지원을 통한 목표 설정의 업그레이드

- 현행 광역지자체들의 ESG 경영 지원 조례의 목표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더해 경제 전반의 저탄소 경제, 포용 경제, 공정 경제로의 전환을 ESG 경영 지원을 통한 궁극적 목표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좁은 의미의 ESG경영지원의 범주화

- 중소기업에 대한 ESG 인식의 제고, 중소기업 ESG 생태계의 조성,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의 구축 등 3축으로 제시된 ESG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좁은 의미의 ESG경영지원의 범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계획/지원계획 수립 · 실행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구체적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ESG경영지원 우선 적용 대상의 명시

- 광역지자체 관련 조례는 ESG경영지원의 대상을 대부분 ‘기업’으로 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에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ESG경영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기업 대상의 ESG 경영도 필요한 바,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구성과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이를 통해 저탄소 (E)·포용 (S)·공정 (G)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 정의(제2조)

- ESG 경영 :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
- ESG 경영 지원 : 좁은 의미의 ESG경영 지원과 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

○ 시장의 책무(제4조)

-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 지원 실시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경영 지원 방안 수립·시행

○ 지원계획(제5조)

- ESG 경영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치구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 수렴
 - 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책
 -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SG 경영 확산(제6조)
- 민간기업 ESG경영 확산
 -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
- 사업(제7조)
-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 ESG 인식제고
 - 기업 ESG 생태계 조성
 - 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 시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시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협력체계(제8조)
 - 정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 위원회(제9조-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 위원회 구성
 - 자문단(제11조)
 - 포상(제12조)
 - 기타(제13조-제14조)
 - 의견청취
 - 시행규칙

3. 서울시 ESG경영 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E)·포용 (S)·공정 (G)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ESG 경영 지원”이란 ESG인증 등 ESG 기준을 기업이 수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지원, 기업 구성원들의 ESG 인식 확대 등을 위한 교육 등 비용 소요에 대한 지원 등 좁은 의미의 ESG경영 지원과 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ESG 경영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경영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 ①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치구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 수렴
 5. 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책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ESG 경영 확산)

-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7조(사업)

- ① 시장은 시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기업 ESG 인식제고
 4. 기업 ESG 생태계 조성
 5. 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6. 시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8.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9.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10.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시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11.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1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13.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지원·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문단 구성)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중소기업부(2021. 11. 23.).
- Trista Bridges , Donald Eubank 지음, 정태용 , 유연철 , 김정훈 옮김, 『지속 가능하게 리드하라』 , 박영사, 2022.
- 권재열 , 김정수 , 김호준 , 박종철 , 박청규 , 배도 , 최승재, 『ESG 레볼루션 지속 가능경영의 절대조건』 , 캐피털박스, 2022.
- 김화진, 『이사회경영 ESG와 기업지배구조』 , the bell(더벨), 2022.
- 리베카 헨더슨 지음, 임상훈 옮김, 『자본주의 대전환 하버드 ESG 경영수업』 , 어크로스, 2021.
- 린 스타우트 지음, 우희진 옮김,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 북돋움coop, 2021.
- 알렉스 에드먼스 지음, 송정화 옮김, 『ESG 파이코노믹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 , 매일경제신문사, 2021.
- 이관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 , 21세기박스, 2022.
- 임팩트 스퀘어, 『ESG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1. 10.)

■ 연구논문

- 김수정, “K-ESG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ESG 관련 국제표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용훈, “헌법적 수준에서의 ESG의 함의와 정책 방향 소고 : 유럽연합의 ESG 정책을 참고하여”, 『유럽헌법연구』 No.36, 유럽헌법학회, 2021.
- 백기웅, “기관투자자의 ESG 스텐더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법과기업연구』 Vol.11 No.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안수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경제법연구』 Vol.20 No.2, 한국경제법학회 2021.
- 이시연,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0, 한국금융연구원, 2021.

이시연,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 금융조사보고서』 Vol.2021 No.1, 한국금융연구원, 2021.

이은선, “사회적 가치와 ESG개념과 전개”,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장윤제, “국내 ESG 평가기관의 환경, 사회 평가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6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21. 3. 26.)

정영철, “행정법과 ESG”, 『연세법학』 Vol.38, 연세법학회 2021.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商事法研究』 Vol.40 No.2, 한국상사법학회, 2021.

■ 기타 참고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1/4 분기)

이로운넷.

중앙일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판권지)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공감소통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담 당 자 : 조지훈 지원관

연구기관 :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책임연구 : 안 지 훈

연 락 처 : 02-2290-2317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47-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

발간등록번호

51-6110100-000247-01

비매품/무료
95330



9 791165 996772
ISBN 979-11-6599-677-2

